

군산시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7월 2일

군산시 조례 제 1031호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군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을 “군산시지방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공무원”을 “군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항중 “통산”을 “합산”으로 한다.

제2조제3항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제1호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군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 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군산시지방공무원</u> ----- ----- ----- -----.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① ----- <u>군산시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u> ----- -----.
②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	②----- ----- ----- ----- ----- ----- ----- ----- ----- ----- ----- -----.
③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③----- -----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8. (생략)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

-----.

1. 제8조의2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2. ~ 8. (현행과 같음)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군산시장 

2012년 7월 2일

군산시 조례 제 1032호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4조 앞에 “제2장 주민자치센터”를 삽입한다.

제4조 본문 중 “읍·면·동”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청사 내”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을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으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를 “시설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를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수강료”를 “수강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0인”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통해 자치센터에 지

원할 수 있다.

제10조의 제목 “(수강료)”를 “(수강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치센터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을 “수강료등은 별표 1의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하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강료”를 “수강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별표1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등을 감면해야 한다.

제10조제6항 중 “의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을 “따라 징수한 수강료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강료””를 “수강료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납부한 수강료등의 환불 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자치센터 이용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범위내”를 각각 “범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3월전”을 “1월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료”를 “수강료등”으로 한다.

제16조제3항 중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를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5명 이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고, 시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읍·면·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의회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을 둔 읍·면·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층이”를 “각층, 각 지역에서”로, “위촉하되”를 “위촉하여야 하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고문”을 “위촉직 고문”으로, “당해 읍·면·동”을 “해당 읍·면·동”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단서 중 “있다”를 “있고, 당연직 고문은 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한한다”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4호 내지”를 “제4호부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23조 단서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등 징수 및 감면 기준

①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제1항과 관련)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시설 사용	무료	운동시설 제외

② 수강료 징수기준(제10조제3항과 관련)

구 분	수 강 료 및 사 용 료	비 고
강좌 수강	월 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인부담
운동시설 사용	월 20,000원 이하	

③ 수강료 등 감면기준(제10조제5항과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읍·면·동장이 추천하는자	전액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전액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 우대자	전액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전액감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 이민자	전액감면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미성년자	전액감면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u>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 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4조(설치등) 자치센터는 읍·면·동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u>당해</u> 읍·면·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② (생략) ③<u>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u>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u>지방자치법</u>」 ----- ----- <u>따라</u> ----- ----- ----- ----- ----- ----- ----- -----.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등)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u>청사내</u>----- -- <u>해당</u> ----- ----- ----- ----- ----- -----. 제5조(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
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
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
한 시설과 프로그램 (이하 “시
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생 략)

③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읍·면·동
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
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읍·면·동사무소가
협조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
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
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② (생 략)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
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군산
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
다)-----

----- 시설 등-----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

-----.

④-----
----- 그
밖에 -----

-----.

제7조(운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 (생략)

----- 제10조제6항에 따라 “수강료 등” -----

-----.

④-----
----- 해당 -----

-----.

⑤-----

----- 따라 -----
-----수강료 등-----

-----.

⑥-----

----- 10명 -----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수강료)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수강료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수강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

⑧ 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발표회(경연대회) 및 작품전시회 등 자치센터 운영 평가를 통해 자치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등) ①자치센터의 운동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운동시설 사용료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를 징수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강료등은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수강료등은 별표 1의 제2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징수하되, -----.

④수강료등-----

-----.

⑤시장과 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별표1의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등을 감면해야 한다.

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 설>

제11조(이용등) ①·② (생략)
③ “수강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서,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⑤ (생략)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

⑥----- 따라 징수한 수강료
등은 -----

-----.

⑦----- 수강료등-----

----- 수강료등-----

-----.

⑧납부한 수강료등의 환불 기준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이용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자치센터 이용자는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치센터 운동시설 및 프로그램의 이용에 대하여 수강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④·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수당) ①-----

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제10조에 의
한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자치센터운영결과보고
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경과 후 20일 이
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
다.

제16조(기능) ①·② (생 략)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
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
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
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
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

----- 범위-----
-----.

②-----
----- 범위-----
-----.

제14조(보고) ①-----
----- 1월전-----

-----.

②-----
-- 수강료등-----

-----.

제16조(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5조제1항-----

-----.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
장,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5명 이
내의 위촉직 고문을 별도로 둘

다.

② 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리장 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생략)

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 계 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수 있고, 시의회 의원은 해당 선거구에 속한 읍·면·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또한 시의회 비례대표의원은 주민등록을 둔 읍·면·동 위원회의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 ----- 해당 -----

-----.

1. 해당 -----

2. (현행과 같음)

③ -----

----- 각층, 각 지역에서 -----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생략)

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 (생략)

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간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정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0조(해촉) 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호의 1

-----위촉하여야 하며-----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고문-----
----- 해당 읍·면·동-----

-----.

⑥ (현행과 같음)

⑦-----

-----.
----- 있고, 당연직 고문은 시의회 의원의 임기에 한한다.

제19조(간사) ①-----
----- 1명-----

-----.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해촉) ①-----
----- 각 호의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의 관할 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 4. (생략)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실비보상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어느 하나-----

----- 제4호부터 -----

-----.

1. 해당 -----

2.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실비보상등) -----

-----.
----- 범위-----
-----.

군산시 고시 제2012-74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같은법 제88조에 의거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6월 22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대야하수처리장)
 - 나. 명 칭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건설폐기물중간처리시설)설치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결 정(m ²)	실시계획		비 고
			당초(m ²)	변경(m ²)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47,188	47,629	47,188	등록전환시 면적정정

4. 사업시행자
 - 가. 주소 :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
 - 나. 성명 : 당초 (주)남성환경 대표 정광식
변경 (주)남성환경 대표 이충기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4 ~ 201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한 토지 등의 조서

연번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1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	답	3,881	3,881	(주)남성환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11	(주)국민은행		근저당	
2		624-1	대	1,438	1,438	(주)남성환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	(주)국민은행		근저당	
3		624-2	잡	3,240	3,240	(주)남성환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	(주)국민은행		근저당	
4		629-7	전	3,982	3,982	(주)남성환경	군산시 미장동 53-1 파일빌아파트 101-903	(주)국민은행		근저당	
5		630	답	545	545	(주)남성환경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주공아파트 201-1103	(주)국민은행		근저당	
6		631	잡	1,045	1,045	(주)남성환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	(주)국민은행		근저당	
7		632	답	1,329	1,329	(주)남성환경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주공아파트 201-1103	(주)국민은행		근저당	
8		633	답	764	764	(주)남성환경	군산시 미룡동 896-1 미룡주공아파트 201-1103	(주)국민은행		근저당	
9		당초 산44-5	임	당초 31,405	당초 31,405	(주)남성환경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 624-2	(주)하나은행		근저당 지상권	등록 전환
		변경 633-1	임	변경 30,964	변경 30,964	(주)남성환경		(주)국민은행		근저당	
합 계		9개 필지		당초47,629 변경47,188	당초47,629 변경47,188						

군산시 고시 제2012-75호

도시계획시설(시장:원예공판장)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시장:원예공판장)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7)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6월 22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수송동 25-1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시장:원예공판장)
 - 나. 명 치 : 시장(원예공판장)시설 주차부지 확충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 분	시설명	결정(㎡)	실시계획인가		비 고
			기시행 면적(㎡)	금회시행면적(㎡)	
시장	원예공판장	28,039	14,923	3,937	주차장조성
계		28,039	14,923	3,937	

4. 사업시행자
 -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수송동 24-13번지
 -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원예농업협동조합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6. ~ 2013. 04. 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등의 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소유권이외의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수송동	25-17	답	3,937	3,937	군산원예 농업협동 조합	군산시 수송동 24-13			

군산시 고시 제2012-78호

도시계획시설(소로 2-922호 외1개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922호 외1개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6월 29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102-2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922호 외1개노선)사업

나. 명 칭 : 임피면 소재지 옆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노 선 명	결정조서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도 로	소로2-922	8.0	137	8.0	137	1,107	
	소로2-924	8.0	111	8.0	111	951	
계			248		248	2,058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6 ~ 201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79호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 보건소) 결정(폐지)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6월 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8	공공청사	보건소	나운동 153-8	2,776.8	감)2,776.8	-	전북고41 (‘94.3.28)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폐지)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2-8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6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6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도서는 군산시청(도시계획과 450-4445)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6월 29일

1. 사업시행지 : 군산시 신평동 902-30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2-66호선)사업

나. 명 칭 : 신평동 2통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구 분	노 선 명	시설결정		기개설		금회 실시계획인가			비 고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폭원(m)	연장(m)	면적(m ²)	
도 로	소로2-66	8	172	8	27	8	145	1,315	
계			172		27		145		

4. 사업시행자

가. 사업시행자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

나. 사업시행자 성명 : 군산시장(도시계획과)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2. 6 ~ 2013 12. 3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 붙임조서 참조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게재실음 생략

8. 관계도서 : 게재실음 생략

군산시 고시 제2012-81호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군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하고 동 관련도서 사본을 군산시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군 산 시 장

2012년 6월 일

1.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9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산북동 2206 일원	-	23,31 2	23,31 2	금회	

2. 군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도서 : 실음생략. 끝.

군산시 고시 제2012-82호

도로명주소(부여·변경·폐지) 및 관련지번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6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 및 변경된 관련지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 7. 2. ~ 7. 16.

군 산 시



○ 도로명주소 부여 : 42건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6건

지번주소	변경된 도로명주소	종전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1건

종전 지번주소	폐지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관련지번 변경 : 18건

도로명주소	변경된 지번주소	종전 지번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 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토지정보과(☎450-608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군산시 공고 제2012 - 1404호

공 고

군산시 공인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신조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7. 2.

군 산 시 장

1. 공인신조 사유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전용
2. 신규공인등록 연월일 : 2012. 7. 2.
3. 신규등록공인 1점

연번	관수부서	공 인 명	인 영	사유
1	토지 정보과		군산시공유토지분할 위원회인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업무 전용

군산시 공고 제2012-1407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 공고

전라북도 군산시장이 시행하는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6월 26일

군 산 시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군산 임피농공단지 조성사업
2. 위 치 :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569-1번지 일원
3. 사업시행자 : 군산시장

※ 위탁시행자 :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4. 사업개요 : 농공단지 조성 239,187m²

5. 열람 및 의견제출

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한 : 공고기간내

나. 열람장소 : 군산시청 투자지원과(☎063-450-6177)

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 지역개발팀(☎850-8277)

6. 공고기간 : 2012. 6. 26. ~ 7. 10. (15일간)

7.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조서 : 별첨

의견서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사업의 종류	
수용·사용대상 토지 및 물건	
의견	
2012년 월 일 성명 : (인) 주소 :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 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수용할 토지 등의 표시 현황

(별지1)군산임피농공단지조성사업(토지)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공부	실제		성명 (지분)	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계	25필지			33,199	19인					
임피면 축산리	97-1	대	대	342	최정민	경기도평택시팽성읍 합정리157-6				
"	101-1	임	임	1,605	"	"				
"	101-3	전	잡	1,351	박용성	군산시 나운동 751-5 신한파크 101호				
"	101-8	임	임	6,075	최영권	군산시 명산동 7-7번지				
"	102-1	묘	묘	516	고 천 형 빈	군산시 임피면 미원리 350	김순태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87-26번지	상속	
							조명희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 28번지	"	
							조정희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 63번지 302동 1306호(신림동, 관악산휴먼시아)	"	
							조철희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이현로29번길 86-4번지 104동 401호(보정동, 대림아 파트)	"	
							조동희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원로 333번지 102동 601호(인후동1가, 위브어울림아 파트)	"	
							조옥희	전북 임실군 운암면 구이로 12번지 101동 806호(엘트호수가아파트)	"	
							조양희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수로 214번지 1514동 602호(황금동, 캐슬골드파크)	"	
							조성숙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48 번지 612동 2504호(정자동, 파크뷰)	"	
							조윤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71번지 1509동 1603호(상동, 한아름)	"	
							최영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로 186번지 734동 808호(목동, 목동신시가자아파 트)	"	
							최주호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36번지 106동 601호(풍무동, 당곡마을)	"	
							최관호	경기도 김포시 풍무로 36번지 106동 601호(풍무동, 당곡마을)	"	
							최춘호	익산시 익산대로 7길 4-14번지(남중 동)	"	
							최미호	익산시 선화로 69길 42번지 101동 606호(부송동, 오페라하우스)	"	
							최동호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순환길 54번지 107동 1302호(풍암동, 풍암지구신암마 을새한센시빌)	"	
							안옥순	군산시 월명로 516-1번지(신흥동)	"	
							조경희	군산시 신흥동 58번지	"	
							조준희	익산시 무왕로26길 32번지 101동 103 호(부송동, 동아아파트1차)	"	
							조성길	군산시 임피면 서원석곡로 468-7번지	"	
							조성자	군산시 신영동 14-14번지	"	
							조성기	익산시 인북로18길 12번지(갈산동)	"	
							조정자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552번길 15번지 109동 501호(은행동, 주공아파 트)	"	
"	102-2	전	전	1,699	오 세 봉 외3인	서울 관악구 봉천동 881-28번지 402호 외	농업협 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 1가 75번지	근저 당권	
"	104	창	창	1,507	장민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04	임피새 마을 금고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80-5	근저 당권	

"	106	대	대	659	"	"	임피새 마을 금고	"	근저 당권	
"	106-1	답	잡	1,090	김혜기	충남 태안군 이원면 내리 594-2	임피새 마을 금고	"	근저 당권	
"	124-1	답	잡	346	"	"				
"	136-3	도	대	6	오창성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35	함복례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39-2번지	상속	
							오정일	군산시 임피면 계남1길 4-2번지	"	
"	136-4	도	도	10	"	"	오정순	군산시 구암3.1길 92-7번지(경암동)	"	
							오정임	전북 완주군 삼례읍 원신금2길 29-11번지	"	
"	136-5	도	도	18	"	"	오정분	전북 익산시 고봉로30길 13번지 107동 801호(영등동 제일맨션타운)	"	
"	137-2	도	도	17	"	"	오정만	전북 군산시 나운로 70번지 308호(나운동 대명아파트 4차)	"	
							오제천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9길 47번지(가산동)	"	
"	139-1	도	도	7	"	"	오제욱	군산시 소룡안3길 24번지 102동 507호(산북동 코오롱아파트)	"	
"	138-3	도	도	112	강우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36	강옥희	전북 남원시 향단로 10-11번지(쌍교동)	상속	
							조환영	경기도 군포시 금산로47번지 107동 1504호(산본동 산본2차 e편한세상)	"	
							조삼영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단지 378번지 101동 107호	"	
							조만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15길 30번지(연희동)	"	
							조선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중로 49가길 27-9번지(길동)	"	
							조복희	서울특별시 강동구 광평로 51길 27번지 405동 503호(수서동 삼익아파트)	"	
							조준영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99번지 4동 410호(신월동 신월시영아파트)	"	
							전진	전주시 덕진구 송천로 1번지 104동 1203호(송천동1가 센트럴파크아파트)	"	
							전경복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로 40번지 204동 1506호(인후동1가 인후꿈마을부영@)	"	
임피면 축산리	138-3	도	도	112	강우현	군산시 임피면 읍내리 436	전경채	전주시 덕진구 아중7길 6번지(우아동2가)	상속	
							전경례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94번지 103동 801호(평화동2가 평화주공그린타운)	"	
							전경미	전북 완주군 소양면 곰티로 29-13번지	"	
							전경지	군산시 미장안길 42번지 105동 1503호(미장동, 미장코아루아파트)	"	
							김남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5번지 15동 32호(여의도동, 시범아파트)	"	
							김혜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이펜1로 50번지 318동 503호(신정동, 이정이펜하우스3단지)	"	
							김혜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70번지 216동 804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김혜자	서울특별시중랑구신내로17길41번지713동901호(신내동진로아파트)	"	
							김혜선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70번지216동804호(목동, 목동신시가지아파트)	"	
							김광태	전주시 덕진구 안골2길 8-6번지(인후동1가)	"	
							김현태	전주시완산구강변로304번지202동201호(중화산동2가,광진햇빛찬2차)	"	
							김길태	전주시 완산구 봉곡1길 14-2번지(효자동3가)	"	
							강탁립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남로113번지 28번지(오정동)	"	
							강해근	서울강남구압구정로347번지21동506호	"	

							(암구정동, 한양아파트)		
						강희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567번지528동1310호 (잠실동, 아파트)	"	
"	143-2	임	임	4,727	이용득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477	군산시 군산시 조촌동 시청로 17	압류	
						최완엽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로16사길 1-4번지	상속	
						최윤엽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46길 32-19번지301호(봉천동)	"	
						최규엽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6다길15번지 101동201호(성내동 영풍마드레빌아파트)	"	
						최인엽	군산시의료원로188번지103동1002호 (나운동나운1차서호아파트)	"	
						최선례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7길 26번지	"	
						최명엽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로15길48-6번지 B동202호(장위동은진스튼아파트)	"	
						최선옥	익산시 동서로509번지101동605호 (여암동익산자이아파트)	"	
						최호엽	전주시 완산구 파박골로 8번지 2동 301호(효자동1가 남양향실아파트)	"	
						최길영	전주시 완산구 고사평3길21-1번지 (서신동)	"	
						김지순	전남순천시 연항1로62번지204동502호 (연항동부영아파트)	"	
						김지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111번길64번지 (신곡동)	"	
						김종택	전북 군산시 옥산면 남내리 440-2번지	"	
						김미화	군산시 창성1길10번지101동1103호 (창성동창성주공아파트)	"	
						김종길	인천광역시 부평구 섭정동 293-13번지	"	
						이순근	군산시 서수면 신구2길 15-10번지	"	
						이순기	군산시 서수면 옥하길 16번지	"	
						이순일	전주시 완산구 물왕명2길19-14번지 (서노송동)	"	
						이재희	강원도 원주시 우산로 89번지(우산동)	"	
						이복순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386번지102동 906호(중화산동1가신일아파트)	"	
						이춘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1번지 1804동703호(상동, 반달마을)	"	
						이춘길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66길17번지 1705동1006호(창동, 주공아파트)	"	
						이형오	군산시 구영6길 98번지(영화동)	"	
						이형탁	전주시 완산구 강변로106번지102동 302호(삼천동1가삼천하이츠아파트)	"	
"	143-4	임	임	5,289	노영자	군산시 대야면 보덕리 295-1			
"	143-1	임	도	155	강병식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143-1			
"	154-10	임	임	108	"	"			
"	154-8	임	임	547	김덕재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 273-4			
"	154-11	임	임	477	최무철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515-4			
"	563-7	답	답	2,562	유영우	군산시 서수면 서수리1263			
"	568-11	답	답	1,033	진병덕	군산시 임피면 축산리 356-1			
"	568-12	답	답	2,941	"	"			

군산시 공고 제 2012-1419호

공 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20조 규정에 의거 2012년 1월1일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주택에 대한 제5회 군산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 공시합니다.

2012년 6월 29일

군 산 시 장

1. 이의신청 개요

가. 공시(가격)기준일 : 2012년 1월 1일

나. 조정결정 주택수 : 군산시 옥구읍 옥정리 480번지 외 11호

다. 조정 · 공시 사항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조정주택

2. 개별주택가격 열람장소

군산시청 세무과(2층) 및 개별주택가격조사상황실(3층)

3. 이의신청에 따른 조정 결정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세무과 과표계(☎454-241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